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30
----------	-----------

제출연월일	2010. 6. 29.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시·도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나. 회의개최, 실무위원회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해제권한이 통합방위본부장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로 변경되고, 선정된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세부 기준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토록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발생에 따른 작전 수행 시 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22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 제8조,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6. 1. ~ 6. 2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① (생략)
② 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거창군 재향군인회장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설>	③ 협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설>	④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⑤ 협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회의의 회의에 올릴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신설>	⑥ 실무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의장이 정한다.
③ (생략)	⑦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p> <p>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p> <p>· 유지</p> <p>다. 취약지역 주민 신고망의 조직</p> <p>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p> <p>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p> <p>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및 봉사 활동의 실시</p> <p>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p> <p>가. 10년생 이상의 입목</p> <p>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p> <p>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p> <p>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6조(거창군 통합방위예규) 관할지역에 적의 테러·침투·국지도발·전면전 등으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거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p>
<p>제6조(운영규칙) (생략)</p>	<p>제7조(운영세칙) (현행 제6조와 같음)</p>